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43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유○○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11. 5.

판 결 선 고 2024. 12. 3.

주 문

1. 피고가 2022.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G, H은 2019. 10. 21. 별지1 목록 기재 ○○시 ○○구 I동 소재 26필지 합계 8,55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9. 및 2022. 2. 15. 원고들과 G, H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279,837,010원, 지방교육세 23,684,270원, 농어촌특별세 11,842,110원 합계 315,363,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과 G, H은 이에 불복하여 2022.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소외 G, H에게 부과된 부분과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부속 토지나 도로



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인 별지1 목록 순번1 토지 중 분할 된 ○○시 ○○구 J 전 715 m²와 순번16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건축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과 원고 D, E, F(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0.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10m²의 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과 G, H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합병·분할하여 A, B, C구역으로 나눈 후 각 1동의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2) 원고들과 G, H은 각각 2019. 11. 21.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9. 12.경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각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주용도	연면적(㎡)
1	G, H	○○시 ○○구 N 외 7필지	노유자시설	2,376.51
2	원고 A 등	○○시 ○○구 N 외 13필지	노유자시설	2,376.51
3	원고 D 등	○○시 ○○구 O 외 7필지	노유자시설	2,376.51

3) 원고들과 G, H은 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2020. 8.경까지 허가 관련 부서의 협의 절차와 보완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중 반복된 협의 사항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로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관련 부서의 협의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시	내용
관련부서(도시정비과) 협의내용	2019. 12. 31.	○ 진입부(P)상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요함 ○ 개발행위허가 부지 상 교통처리계획 제출 요함
	2020. 2. 24.	○ Q호선(R 지방도)은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편도 1차로 L=약 160m 구간에 접한 4개 획지에서 각자 진출입로를 신설할 경우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대책방안) 강구 요망
	2020. 4. 1.	○ Q호선(R 지방도)은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편도 1차로 L=약 160m 구간에 접한 4개 획지에서 각자 진출입로를 신설할 경우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대책방안) 강구 요망
관련부서(철도교통과) 협의내용	2020. 6. 22.	○ 사업지 주변 현황(주변건물의 진입로 표기, 인근도로 차선 표시) 및 중앙선 절선 여부, 노면표시 계획 등을 포함한 차량 진출입 계획도를 제출 ○ 가감속차로 구간의 길이와 횡단면도 제출바람



		○ 인접개발(노유자시설)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통합방안을 검토 바람 ○ 6m 도로와 10m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중앙선 절선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지 차량 진출입이 6m 도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바람 ○ 진입로 감속차로 부분 버스정류장 이전 검토(대중교통과와 위치 협의 필요) ○ 사용승인시 이행사항을 사진 제출 ○ 공사로 훼손된 사업지 주변도로 재포장 요망
	2020. 7. 3.	○ 가감속차로의 폭과 횡단면도 작성 바람 ○ 사용승인시 이행사항을 사진 제출 ○ 공사로 훼손된 사업지 주변도로 재포장 요망
	2020. 10. 5.	○ 가감속차로의 폭과 횡단면도 작성 바람 ○ 사용승인시 이행사항을 사진 제출 ○ 공사로 훼손된 사업지 주변도로 재포장 요망
허가권자 검토의견	○ S호선(T)에서 진출입을 최소한으로 계획하고자 하였으나 U에 사유지(V)의 소유권확보나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여 부득이 신청지 전면 T(지방도W호선)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진출입로는 폭원 6m로 2개소를 계획하고 ○○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적용하여 사업부지 A, B 및 C 부지는 감속부의 감속차로는 각각 15m, 10m이며 테이퍼는 각각 5m로 계획하였으며, 가속부는 가속차로는 각각 30m, 20m이며 테이퍼를 각각 15m로 계획하여 차량교행 및 진출입 환경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으며 가감차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에 무상귀속할 예정임]	

4)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0. 8. 26. 원고들과 G, H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3동)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 수용 의결을 하였고, 원고들과 G, H은 2020. 9.경 아래와 같이 위 의결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조건부 수용 심의 내용	조치 계획
○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동간거리를 6m 이상 확보 필요	▷ 기존계획 건축물 동간거리 3.4~3.7m에서 B=6m 이상으로 동간거리 확보하였음
○ T의 교통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1개소로 일원화하고, 향후 진출입구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T의 교통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 진출입로 2개소를 1개소로 일원화하였음 ▷ 진출입구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감속차로 A=192㎡(기존 A=180㎡) 중



	A=140㎡에 대한 부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무상귀속하겠음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건축물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건축물 출입구에 이동식 어닝(8×2)을 설치하여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사업대지 내 휴게공간, 산책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	▷ 각 사업부지별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에 옥상파고라 1개소, 벤치 10개소를 두었으며, 테크휴게공간에는 파라솔 4개소를 설치하였음. 또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사업부지별 일반주차 13대, 구급차전용주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장 1대로 총 15대로 기존 계획 14대보다 추가 확보하였음

5) 원고 A 등은 2020. 11. 9.에, 원고 D 등은 2020. 11. 10.에 각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해당 부분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물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6) 원고들은 2020. 11. 30. 착공신고를 하고,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D 등은 2021. 12. 13.에 원고 A 등은 2021. 12. 14.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7) 원고 D 등은 2022. 1. 25. 'X'라는 기관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고, 원고 A 등은 'Y'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3, 17, 18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결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마.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과 G, H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시설 3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9. 7. 10. 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1.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9. 11. 21. 건축허가를, 2019. 12.경 개발행위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이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들은 2019. 11. 21. 및 2019. 12.경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2019. 11. 9.경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여러 차례의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보완을 거쳤는데, 그중 가장 오랫동안 보완절차를 거친 것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의 계획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각 노인복지시설별로 진입로를 이 사건 사업부지 전면 T(지방도W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쪽으로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는 이 사건 도로쪽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증가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허가관청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측면의 U쪽의 진출입을 검토하였으나, 진출입에 필요한 ○○시 ○○구 V 토지의 확보가 불가하여 다시 이 사건 도로쪽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되 이 사건 사업부지 안쪽으로 가감속차로를 개설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개설할 진출입로를 1개로 통합하고 개설할 가감속차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협의와 보완의 과정에서 원고들이 보완을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협의와 보완의 과정은 교통안전이라는 또 다른 공익의 달성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들이나 허가관청에 어떠한 귀책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2019. 11. 9.경 건축허가를 받고 2020. 11. 30. 착공신고를 한 후, 노인복지시설 3동을 신축하여 2021. 12. 1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와 노인복지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 건축기간 중 철근값 상승이 있었던 점, 동간 거리



등 기존의 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들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해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 심의·개발행위허가 심의 지연 또는 건축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기로 약정하고(도급계약서 제6조), 자재가 갑자기 폭등한 경우 계약금액을 인상하기로 정하였으므로(건설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원고들은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이용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 충분한 혜택을 얻었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한 해석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는 서로 별개이므로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앞서 본 법리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별지1]

목록

순번	소재지	면적 (m ²)
1	○○시 ○○구 N	535
2	○○시 ○○구 Z	1
3	○○시 ○○구 AA	795
4	○○시 ○○구 AB	245
5	○○시 ○○구 AC	217
6	○○시 ○○구 AD	129
7	○○시 ○○구 AE	25
8	○○시 ○○구 AF	642
9	○○시 ○○구 AG	390
10	○○시 ○○구 AH	25
11	○○시 ○○구 AI	308
12	○○시 ○○구 AJ	221
13	○○시 ○○구 AK	399
14	○○시 ○○구 AL	2
15	○○시 ○○구 AM	13
16	○○시 ○○구 AN	642
17	○○시 ○○구 AO	830
18	○○시 ○○구 O	877
19	○○시 ○○구 AP	566
20	○○시 ○○구 AQ	643
21	○○시 ○○구 AR	20
22	○○시 ○○구 AS	166
23	○○시 ○○구 AT	397
24	○○시 ○○구 AU	1
25	○○시 ○○구 AV	87
26	○○시 ○○구 AW	38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별지2]

부과내역 목록(원고들 청구 부분)

부동산 소재지	과세번호	납세자	구분	과세금액	
외 17필지 7147.0000㎡	중 일부 (소의 취득자 지분 및 토지 제외)		취득세	118,101,180	
			지방교육세	9,995,630	
			농특세	4,997,820	
			계	133,094,630	
외 1필지 12.3㎡		외 2명	취득세	2,893,230	
			지방교육세	244,860	
			농특세	122,420	
			계	3,260,510	
외 1필지 110.7㎡		외 2명	취득세	26,039,240	
			지방교육세	2,203,850	
			농특세	1,101,920	
			계	29,345,010	
외 1필지 16.2㎡		외 2명	취득세	3,264,260	
			지방교육세	276,270	
			농특세	138,130	
			계	3,678,660	
외 1필지 145.8㎡		외 2명	취득세	29,378,470	
			지방교육세	2,486,470	
			농특세	1,243,230	
			계	33,108,170	
총 계			취득세	179,676,380	
			지방교육세	15,207,080	
			농특세	7,603,520	
			계	202,486,980	



[별지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끝.